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249
----------	------

제안년월일 : 2023년 9월 4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23년 8월 14일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32호)과 같은날 전병주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6호) 및 김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04호)이 2023년 8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이상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2023년 9월 4일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2022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전국 최하위인 0.5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는 등 심화되는 저출산 상황에서 다태아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및 동반 보호자등이 편안하게 외출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편의공간 확대 지원 및 양육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출산·양육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엄마아빠 행복주간”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다태아 임신부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6 신설)

- 아동 및 동반 보호자등이 편안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업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 매년 어버이날이 포함된 주간을 엄마아빠 행복주간으로 정하고 취지에 맞는 행사나 교육·홍보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의2 신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조성을 위한 지원
2.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3.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제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6(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을 “출산·양육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친화적”을 “출산 및 양육친화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산, 양육 관련 부모교육 사업
2. 출산, 양육 관련 시민단체 지원
3. 아동과 동반 보호자등이 편안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업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엄마아빠 행복주간) ① 시장은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양육자 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어버이날이 포함된 주간을 엄마아빠 행복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엄마아빠 행복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나 교육·홍보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결혼·임신·출산 지원) ① 시장은 결혼·임신·출산에 불 편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추진해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 ⑥ (생 략)</p> <p><신 설></p>	<p>제4조(결혼·임신·출산 지원) ①</p> <p>----- ----- -----.</p> <p>1. <u>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조 성을 위한 지원</u></p> <p>2. <u>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 감을 위한 지원</u></p> <p>3. <u>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를 위한 지원</u></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6(다태아 임신부 등에 대 한 지원) <u>시장은 다태아(多胎 兒) 임신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제7조(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시장은 <u>출산친화적</u>인 사회분위 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p> <p>1. <u>출산장려를 위한 부모교육사 업</u></p> <p>2. <u>출산장려 및 양육관련 시민</u></p>	<p>제7조(출산·양육친화 사회분위 기 조성) ----- -- <u>출산 및 양육친화적</u>----- -----.</p> <p>1. <u>출산, 양육 관련 부모교육 사 업</u></p> <p>2. <u>출산, 양육 관련 시민단체 지</u></p>

현행	개정안
<p><u>단체의 지원</u></p> <p><신설></p> <p><신설></p>	<p><u>원</u></p> <p>3. <u>아동과 동반 보호자등이 편안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업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u></p> <p>제7조의2(엄마아빠 행복주간) ①</p> <p><u>시장은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양육자 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어버이날이 포함된 주간을 엄마아빠 행복주간으로 한다.</u></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엄마아빠 행복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나 교육·홍보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u></p> <p>③ <u>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